

의안번호	2219528
의 퇴 인	윤종오 의원
회 답 일	2026.10.2.
추 계 번호	26B31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적용 제외)	<u>70세 이후에 고용</u>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u>70세 이후에</u>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 <u>예술인</u> , <u>노무제공자</u>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3	안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항) 1. <u>70세 이후에</u>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u>70세 전부터</u>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u>70세 이후에</u>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의무규정
4	안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항) 1. <u>70세 이후에</u>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u>70세 전부터</u>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u>70세 이후에</u>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적용 제외)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본문 참조
2	안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3	안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4	안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2. 상세 사유

- (안 제10조) 현행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근속한 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제4장),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제5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실업급여(제4장),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제5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고령자의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산출에 필요한 피보험자의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 자녀의 존재 여부 및 사용 의사 등에 관한 자료가 미비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안 제23조)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내용임

[표] 고용촉진장려금

(단위: 백만원, %)

연도	당초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2021	94,220	516,210	481,702	93.3	34,508
2022	125,954	125,954	125,669	99.8	285
2023	64,771	64,771	43,448	67.1	21,323
2024	37,494	30,094	20,622	68.5	9,472
2025	22,997	22,997	18,353	79.8	4,644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은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대상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정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규사업이 시행될 수도 있어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기존 사업의 확대 및 변경 여부와 규모와 신규사업의 시행 여부 및 규모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의 발생 여부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77조의2) 현행법은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65세 이상 70세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장래에 발생할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이들에게 지급될 실업급여 등의 산출에 필요한 평균임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등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개정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